

## 2016. 강북구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자료

- 일 시 : 2016.02.17.[수] 16:00
- 회의안건 : 2016. 강북구 장애인복지 종합추진 계획(안)
- 회의장소 : 구청 기획상황실
- 참석자 :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11명



**강 북 구**  
(주민생활국/생활보장과)

I. 추진근거 .....	1
II. 추진목표 .....	1
III. 추진방향 .....	2
IV. 장애인복지 세부추진계획 .....	2
① 장애인복지 기반구조 개선 .....	2
② 장애인소득증대 사업 .....	8
③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가족지원 .....	10
④ 장벽없는 환경만들기 .....	14

#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한 “희망강북” 구현을 위한 2016년도 장애인복지 종합추진계획

장애인들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 등의 추진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한 “희망강북”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I 추진 근거

- 장애인복지법 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-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
-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3조(책무)

## II 추진 목표

소통과 배려로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한 “희망강북”



## III 추진 방향

- 장애인복지 기반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
-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 강화
-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지원 사업의 내실화
-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·정비를 통한 이동편의증진 도모

## IV 세부 추진 계획

### I. 장애인복지 기반구조 개선

#### 1.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

- 추진근거 :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- 사업개요
  - 위 치 : 강북구 인수봉로 291(수유동 545-3)
  - 건물현황 : 지상 5층, 대지 348㎡, 연면적 718.85㎡(218평)
  - 시설내용 : 단체 사무실, 무료식당, 상담실, 강당, 휴게실 등
  - 사 업 비 : 2,300백만원(장애인회관건립기금)
    - 건물매입비 1,680,000천원, 공사비 500,000천원, 물품구입비 67,440천원, 사무관리비 52,060천원
  - 추진일정
    - 2016.02.~06. : 리모델링 공사
    - 2016.07.(예정) : 장애인회관 개관

## 2. 장애인복지지원센터(장애인회관) 운영 지원

### ■ 시설현황

구 분	장애인복지지원센터	장애인회관
위 치	덕릉로 126	인수봉로 291
규 모	1개층 346.5㎡	5개층 718.85㎡
월 운영비	4,600천원	6,000천원
월 급식비	8,100천원	8,100천원
건물현황	전세금 6억원 / 월임차료 40만원	강북구 소유 건물

■ 시설내용 : 단체 사무실, 무료식당, 편의시설지원센터 등

■ 사 업 비 : 163,200천원(구비)

- 운영비: 63,600천원, 무료급식: 97,200천원, 임차료: 2,400천원

■ 단체현황 : 29개 단체 2,365명

■ 지원내용 : 운영비, 무료급식비, 임차료 지원

## 3.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

■ 위 치 : 강북구 한천로131길 7 경일빌딩 2,3층(271.1㎡)

■ 시설내용 : 사무실, 무료식당, 컴퓨터, 교육장 등

■ 시설현황 : 전세금 3억원 / 월임차료 275만원

■ 사 업 비 : 39,000천원(구비)

■ 지원내용 : 임차료(월275만원), 운영비(월50만원) 지원

## 4.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실태 지도·점검 실시

### ■ 점검개요

- 점 검 기 간 : 2016.05.02. ~ 2016.09.30.
- 점검대상기간 : 2015.01.01. ~ 2015.12.31.
- 점 검 대 상 : 2개법인, 26개 장애인복지시설
- 점 검 반 : 2개조 총 6명 (장애인복지팀)

### ■ 지도·점검방법

- 점검 요원이 1일 1개 시설, 현지 출장하여 지도·점검 실시
- 점검자가 운영법인(운영자)의 자율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

### ■ 지도·점검내용

- 사회복지사업법,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법인재무·회계규칙에 정한 일반사항
- 각종 장부 비치현황 및 안전점검
- 조직인사·급여,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현황
-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실태 및 기타 제반사항

### ■ 지도·점검 결과조치

- 점검결과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은 서울시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개선토록 조치
- 점검결과에 따른 주요 위반 사례 현장 지도 및 행정조치
- 주요 모범사례 등은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에 안내

## 5.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

■ 위 치 : 강북구 오현로 189

■ 장애인복지관 사업내용

- 의료, 교육, 직업 및 사회심리 재활사업
- 정보화교육 및 여가지원
- 자원봉사 및 후원자 개발, 지역사회 자원개발 연계

■ 재가복지봉사센터 사업내용

- 장애인 가정을 순회 방문하여 상담, 훈련교육, 치료 등 제공
- 가사도움 및 외출협조를 통한 사회적응 훈련
-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계몽 홍보

■ 사 업 비 : 1,336,185천원(시비90%, 구비10%)

## 6.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

■ 추진근거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
-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■ 위원구성

- 위원장(구청장)을 포함한 11명 위원으로 구성
- 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,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

※ 위촉위원 장애인 50%이상, 여성 40%이상

■ 정기회의 : 2월

## 7. 장애인 인식개선 추진

### 가. 장애인 구정 참여 확대

■ 각종 위원회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복지 전문가 위촉·참여 추진

### 나.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

■ 교육일시 : 2016년 10월 중

■ 장 소 : 국립재활원 교육장

■ 교육대상 : 사회복지시설 종사자

■ 교육내용 :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체험 중심

### 다. 장애인구정평가단 운영

■ 구성현황 : 18명(지체 17, 장루1)

■ 주요내용

- 구민 다중이용시설과 밀접한 분야 선정 후 현장방문 평가
- 우리구 장애인 정책 및 구정전반에 대한 건의
- 보고회 개최를 통한 평가결과 공유 및 개선방안 모색

■ 평가개요

- 평가기간 : 2016년 9월 ~ 10월 중 (6일간)
- 평가대상 : 강북구 다중이용시설인 공공기관 및 주민센터 등
- 평가사항 :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 여부 등
- 평가방법 : 방문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
- 보 고 회 : 2016년 10월 중

■ 사 업 비 : 2,930천원(구비)

## 8. 장애인을 위한 지역축제, 행사지원

### 가. 강북구 장애인 한마음축제 (장애인의날 기념)

- 일 시 : 2016년 4월 29일(금) - 예정
- 장 소 : 강북구민운동장
- 대 상 : 3,000명
- 내 용 : 모범장애인 등 표창, 체육대회, 노래자랑 등
- 주 최 : 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
- 사 업 비 : 16,200천원(구비)

### 나. 중증 장애인 밝은 세상 나들이

- 일 시 : 2016년 4월~5월 중 1일
- 장 소 : 장애인이 선호하는 문화 체험시설 및 명소
- 내 용 : 관광과 프로그램을 통한 외부와의 접촉 기회 마련
- 주 관 :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
- 사 업 비 : 1,823천원(구비)

### 다. 장애인단체 행사지원

- 사업기간 : 2016년 1월 ~ 12월
- 지원내용 :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등 장애인단체 각종 행사지원
- 지원단체 : 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
- 사 업 비 : 11,337천원(구비)

### 라.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지원

- 사업기간 : 2016년 1월 ~ 12월
- 지원내용 : 수상스키 등 문화체험,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
- 지원단체 : 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
- 사 업 비 : 20,190천원(구비)

### 마. 장애인 문화교류 지원

- 일 시 : 2016년 3월
- 내 용 : 국내외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와의 문화·정보 교류의 장 마련
- 주 관 :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
- 사 업 비 : 5,103천원(구비)

## II. 장애인소득증대 사업

### 1.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지원

- 위 치 : 강북구 오현로 199-9
- 지원사업 : 급식실 및 컴퓨터교육 운영
- 수탁기관 :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
- 사 업 비 : 19,440천원(구비)

## 2. 장애인 일자리 제공

### 가. 시각장애인 일자리 (안마서비스 순회) 지원

- 사업기간 : 2016년 2월 ~ 12월, 주5회(월 ~ 금요일)
- 운영인원 : 6명(안마사 5명, 운영요원 1명)
- 운영장소 : 경로당, 장애인복지관,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순회
- 운영기관 :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
- 사업비 : 92,401천원(구비)

### 나. 장애인 복지일자리 운영

- 사업기간 : 2016년 1월 ~ 12월(1년)
- 대 상 :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27명
- 사업내용 : 급식도우미 12명, 환경도우미 15명
- 사업비 : 114,372천원 (보조비율 30:35:35)  
※ 국비 34,312천원, 시비 40,030천원, 구비 40,030천원

### 다.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운영

- 사업기간 : 2016년 1월 ~ 12월(1년)
- 대 상 : 18세 이상 행정업무수행이 가능한 등록장애인 21명
- 배치인원 : 구 및 동 13명, 편의시설 조사요원 5명, 수화통역센터 3명
- 사업비 : 378,273천원 (보조비율 30:35:35)  
※ 국비 113,481천원, 시비 132,396천원, 구비 132,396천원

## Ⅲ.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가족지원

### 1.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

#### 가. 장애인활동지원 사업

- 대 상 : 만6세 이상~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~3급 장애인
- 지원내용 : 활동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
- 급여량 : 1~4등급에 따라 차등지원(1,063천원/852천원/642천원/430천원)
- 사업비 : 6,423,047천원 (보조비율 50:40:10)  
※ 국비 3,211,523천원, 시비 2,569,219천원, 구비 642,305천원

#### 나.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시비추가사업

- 대 상 : 국고보조사업 1등급자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등
- 지원내용 : 1인당 매월 40시간~200시간 추가 지원
- 사업비 : 1,175,750천원(시비)

#### 다. 장애인활동지원 순회방문서비스 실시

- 사업기관 : 장애인복지관, IL센터 등 활동보조제공기관 중 1개소 선정
- 인력선정 : 활동보조인 자격을 가진 장애인 위주 3명 선정
- 제공방법 : 야간 순회방문 인력이 대상자 가구 직접 방문
- 방문시간 : 22시~익일 6시, 2~3회 방문
- 역할 : 응급상황 확인, 건강상태 체크, 체위 변경 등

**라.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지원**

■ 대 상 : 18세 이상 등록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자(단독 1,000천원, 부부 1,600천원)

※ 중증장애인 : 장애등급 1, 2급 및 3급 중복장애

■ 지급금액

구 분	18세 ~ 64세			65세 이상	비 고
	기초급여	부가급여	합계	부가급여	
기초생활수급자	202,600	80,000	282,600	280,000	-
보장시설수급자		0	202,600	-	-
차상위계층		70,000	272,600	70,000	-
차상위초과자(하위70%)		20,000	222,600	40,000	-

※기초생활수급자(보장시설) 65세 이상 : 부가급여 7만원(1945년 6월 30일 이전출생자만 해당)

■ 사 업 비 : 7,862,468천원(보조비율 50:40:10)

※ 국비 3,931,986천원, 시비 3,144,987천원, 구비 786,247천원

**마.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**

■ 사업기간 : 2016년 3월 ~ 12월

■ 운영기관 : (사)함께가는 강북장애인부모회 (회장 정재숙)

■ 사업대상 : 재가 발달장애인 10명 내외

■ 사업내용

- 발달장애인 청소년 및 성인 대상 자기옹호 및 자립기술 교육
-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직업체험훈련 교육

■ 사 업 비 : 3,000천원(구비)

**바. 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**

■ 운영기관 :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

■ 대 상

-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 사용자(수·전동휠체어, 스쿠터)
-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주민대여용 수동휠체어

■ 사업내용 : 장애인보장구 점검 및 대여서비스, 부품·소모품비 지급

■ 방 법 : 전화, 내방상담, 방문수리

■ 지원기준
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·차상위 장애인 : 20만원까지 전액무료
- 일반 중증 장애인 : 수리비 50%지원 (최고 10만원까지)
- 주민대여용 수동휠체어 : 수리비100%지원

■ 사 업 비 : 52,247천원(구비)

**사.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 운영**

■ 운영단체 :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

■ 장 소 : 강북구 도봉로76길 52, 미아요진아파트 101동 406호

■ 사업내용 : 자립생활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 제공

■ 입소현황 : 중증장애인 3명

■ 전 세 금 : 180,000천원(구비)

## 2. 장애인지역사회 재활 지원

### 가. 사랑의 수화교실

- 장 소 : 강북구수화통역센터 (강북구 한천로131길 7 경일빌딩3층)
- 교육인원 : 60명 (어르신반, 사회복무요원반, 기초반, 중급반)
- 교육내용 : 기초 수화교육(기수별 총 18회)
- 사 업 비 : 5,420천원(구비)

### 나. 강북점자도서관 운영 지원

- 위 치 : 강북구 삼양로73가길 47 한빛맹학교 2층
- 사업내용
  - 강북구점자소식지 분기1회 발간- 시각장애인 및 관공서 등에 제공
  - 점자도서구입, 장애인 부모 점자교육 등
- 사 업 비 : 39,915천원(구비)

### 다.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

- 대 상 자 : 18세미만의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장애아동
  - ※ 6세미만의 미등록 장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가능
  - 소득수준 :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% 이하 (소득별 차등지원)
- 서비스내용 : 언어·청능치료, 미술·음악치료, 행동·놀이·심리운동 치료 등 발달재활 서비스, 장애 조기발견 및 발달진단 서비스와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
- 서비스단가 : 월22만원(본인부담금 0원~8만원)

### 라. 장애인정보신문 배부

- 배포규모 : 266부(장애인가구 170부, 장애인기관 3개소 96부)
- 배부방법 : 개별 우편발송
- 사 업 비 : 6,384천원(구비)

### 마. 장애인가족지원

- 대 상 : 강북구 거주 장애인 및 가족 30명
- 운영기관 :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
- 내 용 : 가족교육 및 집단활동, 가족캠프 1박2일
- 사 업 비 : 3,560천원(구비)

## IV. 장벽없는 환경만들기

### 1.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및 지원기능 강화

#### 가.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

- 소 재 지 : 장애인복지지원센터(장애인회관) 내
- 사업내용
  -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(도면·재질·설치동선 등 검토 및 대안제시)
  -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(전수 및 표본조사) 참여
  -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추진 등
  -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와 교육
- 사 업 비 : 83,726천원(시비 41,863천원, 구비 41,863천원)

#### 나.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지원

- 이용대상 : 장애인·노약자 등
- 운영내용 : 평일 1일 4회 운행(월 ~ 금요일), 토요일 2회 운행
- 운영주체 :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(위탁운영)
- 사 업 비 : 105,812천원(시비 52,906천원, 구비 52,906천원)

## 2. 무장애 사업 추진

### 가. 민간건물 무장애 인증제 활성화

- 민간건물 무장애 확충 : 『민간시설 무장애 인증』 가능시설 신규 발굴 추진
- 무장애 인증 취득가능 대상 건축물 실태조사 발굴
- 기존 건축물은 민간건물 무장애 인증 적용가능 여부 확인 후 추진
- 신축 중인 건물은 설계변경 유도
- 건축 설계단계 : 사전 안내하여 민간건물 무장애 인증제도를 적용토록 설계 유도 (협조부서 : 디자인건축과)

※ 민간시설 무장애 인증현황 : 1개소 (롯데백화점 미아점)

### 나. 민간건물 편의시설 지속적 확충

- 민간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 협의 시 적정여부 확인
- 신규 민간 건축물 설치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를 강화하여 사용 승인 전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의무화
- 민간건물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홍보 강화

## 3.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

- 추진근거 :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, 제27조 제2·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
- 단속장소 : 편의증진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관내 공공기관, 아파트, 대형마트 등 모든 시설
- 단 속 반 : 생활보장과(2개조 6명)